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서식] <신설 2019. 11. 12.>

처 분 신 고 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
양도인	회사명 (전화번호:)	
	대표자 성명	법인등록번호
	법인 소재지	

양수인	회사명 (전화번호:)	
	대표자 성명	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)
	법인 소재지(주소지)	

* 양수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, 생년월일 및 주소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양도 내용	산업단지 명칭 / 공장 소재지			
	용지 면적(㎡)		건축 면적(㎡)	
	① 매각대금(원)		양도 차익*(원) * ①-②-③-④	
	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(원)			
	③ 제세공과금(원)		④ 매각관련 모든 경비(원)	
사업재편계획 승인일				
양도차익의 사용용도				

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3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했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 서류 (신고인 제출)	1.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.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